

# 차시별 학습시간 및 진도율 모니터링 변경사항 안내

<'25. 9. 17.(수),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모니터링부>

## 1. 개요

### 【 차시별 학습시간 미달 유형 개요 】

- (분석 유형명) 차시별 학습시간 미달(유형 번호 19)
- (분석 주기 및 조치) 매월 정기 분석 및 소명 요청
- (내용) 차시별 최소 학습시간 미달인 경우 발생

- (목적) 차시별 학습시간에 대한 규정 준수 사항 모니터링 강화
- (내용)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50% 이상 학습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 범위 이상의 비정상 데이터 검출 시, 해당 사항에 대해 훈련기관에 소명 요청
- (근거)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(훈련과정의 인정 요건 등) 별표 1

#### [별표1]원격훈련의 인정요건 (제6조 관련)

원격훈련		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
평가 및 진도율	진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진도율은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학습 진도율을 인정</li><li>· 수료기준이 학습목표 달성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것</li></ul>

- (적용 대상 훈련 유형) 사업주 인터넷원격 및 스마트훈련, 국민내일 배움카드 인터넷원격
  -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훈련의 경우,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19조(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요건)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인터넷 원격훈련과 동일하게 적용함

제19조(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요건) ③ 인터넷원격과정, 우편원격과정, 스마트훈련과정(이하 “원격 훈련과정”이라 한다)을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별표 1의 요건을 갖출 것

- ※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화 훈련과정 중 원격훈련이 포함된 훈련(K-디지털 트레이닝, K-디지털 기초역량훈련)의 경우는 각 특화 훈련과정별 지침에 따라 학습시간을 철저히 관리할 것

## 2. 주요 내용

- **(분석 기준 변경)**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50% 이상 달성 여부 분석(기준: 차시별 13분 이상 학습 여부 분석)
  - 이때 학습시간은 시작시간(S)과 종료시간(E)의 차이 값으로 산출함

### [ 차시별 학습시간 산출 방법 ]

#### 1. 한 차시 내에 존재하는 시작시간(S)과 종료시간(E)의 차이 값으로 산출

\* 산출된 차시별 학습시간이 인정받은 학습시간을 초과할 경우,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으로 차시별 학습시간을 산출함

#### 2. 한 차시 내에 시작시간(S)과 종료시간(E)이 모두 있으나 다수인 경우, 아래 기준으로 차시별 학습시간 산출

##### <데이터 전송유형별 학습시간 세부 산출기준>

유형	산출 방법
❶ S - E1 - E2 - E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학습 종료기록(E)이 여러 개 있는 경우 → <b>가장 마지막 종료시간(E3) 활용</b> .. 학습기록을 일정 주기마다 자동으로 전송하는 사례</li></ul>
❷ S1 - S2 - S3 - E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학습 시작기록(S)이 여러 개 있는 경우 → <b>가장 마지막 시작시간(S3) 활용</b></li></ul>
❸ S1 - E1 - S2 - E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중간에 접속과 종료 반복 및 분할 수강(정상 종료) → 학습시간 <b>산출 그룹(S-E) 설정 후 각 그룹*들의 학습시간 합</b></li></ul>
❹ S1 - S2 - E1 - E2 - S3 - E3 - S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중간에 접속과 종료 반복 및 분할 수강(비정상 종료) → 학습시간 <b>산출 그룹(S-E) 설정 후 각 그룹*들의 학습시간 합산</b></li></ul>

\* 각 그룹 내에서는 마지막 시작기록(S)과 마지막 종료기록(E) 활용

#### 3. 한 차시 내에 시작시간(S) 또는 종료시간(E)이 하나라도 없는 경우, 학습시간은 0초로 산출

#### 4. 진도기록을 전송하지 않은 경우, 해당 차시의 학습시간은 0초로 산출

- **(모니터링 적용 시점)** '25. 9월 모니터링부터 적용' ('26. 7월 수료보고 과정)
  - 비정상 데이터는 전송하되, 훈련기관이 '25. 12월까지 LMS 수정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부여 후 소명 요청 예정
    - \* 공단에서 비정상 데이터는 전송하지만, 훈련기관에서 소명을 등록할 필요는 없음
- **(소명 요청 시점)** '26. 3월 모니터링부터' ('26. 1. 1. 이후 훈련 실시 과정)

### 3. 학습시간 및 진도율 데이터 전송 방법

#### □ 차시별 학습시간 데이터 전송 방법 및 유의사항

- (학습관리시스템(LMS) 수정)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과 공단의 학습 시간 산출 방법을 고려하여 LMS를 수정하고 학습시간 데이터 전송
- (데이터 전송 방법) 훈련생의 훈련시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차시별로 시작기록(S)과 종료기록(E)를 모두 전송하며, 차시별 학습 중간 마다 'E'값을 전송하거나 'S-E'값으로 전송을 권장함
  - (권장) '① S - E1 - E2 - E3', '③ S1 - E1 - S2 - E2'의 전송 방법
  - (비권장) '② S1 - S2 - S3-E'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시작기록(S)으로 설정하여 데이터 전송하는 방법은 권장하지 않음

#### □ 누적 진도율(SCORE) 전송 방법 및 유의사항

- (학습관리시스템(LMS) 수정)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」 개정 예정 사항('26. 1. 1. 예정)\*을 반영하여 LMS를 수정하고 누적 진도율(SCORE) 데이터 전송

\*[ 지침 개정 예정 사항 ]

##### (4) 훈련방법별 수료요건

(생략)

- 인터넷원격훈련 및 스마트훈련

(생략)

-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(1일 학습시간은 8시간 초과 불가)

- (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)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실제 학습시간을 인정

☞ (사례) 1차시가 30분인 과정의 경우, 실제 학습 시간이 15분이면, 학습 시간 15분 인정

※ 배속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학습한 시간만 인정함

※ 실제 학습시간은 각 차시별 과정심사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음

- (최종진도율 산정 기준) 진도율은  $\text{전체 학습시간} \div \text{전체 소정훈련시간} \times 100$  으로 계산하며, 소수점 발생 시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

※ 전체 학습시간 :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전체 차시의 실제 학습시간의 총합

※ 실제 학습시간 : 훈련생이 콘텐츠 학습에 참여한 실제 소요시간

※ 전체 소정훈련시간 :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각 차시별 학습시간의 총합

※ 공단 기업지원부 HRD-Net 안내사항(공지사항 게시글('25.9.16. 등록)) 참조

- (차시별 실제 학습시간 반영) 각 차시별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 시간의 50% 이상을 학습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의 실제 학습 시간\*을 누적 진도율에 반영함
  - \* 인정받은 학습시간이 30분인 경우, 20분 학습 시 20분만 진도율에 반영함
  - \*\* 배속 기능을 사용하여 수강한 경우에도 실제 학습한 시간만 반영함(예: 인정받은 학습시간이 30분인 경우, 2배속으로 15분을 학습한 경우 15분만 진도율에 반영)
- (누적 진도율 관리 및 전송) 누적 진도율은 [전체 학습시간÷전체 소정 훈련시간×100]으로 계산하며, 소수점 발생시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며,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전송(예시: 87.5)
  - 각 차시별 마지막 E값의 누적 진도율은 다음 차시의 첫 S값의 누적 진도율과 동일하도록 관리함

\* 해당 과정은 총 10차시로 구성 / 각 차시별 인정받은 학습시간은 30분(1,800초), 전체 소정훈련시간은 300분(18,000초)

훈련기관	회원PK	과정PK	수업PK	평가방법	진도시작일시 진도종료일시	누적 진도율	접속시작/종료 구분	평가코드	차시별 실제 학습시간 반영	
									START_END_FLAG	EVEL_CD
ABCedu	KKK1234	567890	123456	진도_2	2025-09-03 10:25:00	15.0 (2,700/18,000)	E	01	반영(+600초)	1,500초(25분)
ABCedu	KKK1234	567890	123456	진도_2	2025-09-03 10:15:00	11.7 (2,100/18,000)	E	01	반영(+900초)	900초(15분)
ABCedu	KKK1234	567890	123456	진도_2	2025-09-03 10:10:00	6.7	E	01	미반영	600초(10분)
ABCedu	KKK1234	567890	123456	진도_2	2025-09-03 10:00:00	6.7	S	01	미반영	0분(0초)
ABCedu	KKK1234	567890	123456	진도_1	2025-09-01 18:20:00	6.7 (1,200/18,000)	E	01	반영(+300초)	1,200초(20분)
ABCedu	KKK1234	567890	123456	진도_1	2025-09-01 18:15:00	5.0 (900/18,000)	E	01	반영(+900초)	900초(15분)
ABCedu	KKK1234	567890	123456	진도_1	2025-09-01 18:10:00	0.0	E	01	미반영	600초(10분)
ABCedu	KKK1234	567890	123456	진도_1	2025-09-01 18:00:00	0.0	S	01	미반영	0분(0초)

## □ 최종 진도율(PROGRESS\_RATE) 전송 시 유의사항

- (최종 진도율 관리) 누적 진도율은 [전체 학습시간/전체 소정 훈련시간 × 100]으로 계산하며,
  - 성적 테이블(SCORE TABLE) 해당 과정의 마지막 E값의 누적 진도율(SCORE)은 수강 테이블(ATTEND TABLE)의 최종 진도율(PROGRESS\_RATE) 값과 동일하도록 관리함

**<SCORE(성적) TABLE>**

훈련기관	회원PK	과정PK	수업PK	평가방법	진도시작일시 진도종료일시	누적 진도율	접속시작/종료 구분	평가코드	
AGENT_PK	USER_AGENT_PK	COURSE_AGENT_PK	CLASS_AGENT_PK	EVAL_TYPE	SUBMIT_DATE	SCORE	START_END_FLAG	EVEL_CD	
ABCedu	KKK1234	567890	123456	진도_21	2025-09-15 18:00:00	90.0	E	01	
<b>&lt;ATTEND(수강) TABLE&gt;</b>									
훈련기관	회원PK	과정PK	수업PK	최종 진도율	총점	수료여부	수강확정여부	고용환급과정여부	변경상태
AGENT_PK	USER_AGENT_PK	COURSE_AGENT_PK	CLASS_AGENT_PK	PROGRESS_RATE	TOTAL_SCORE	PASS_FLAG	ATTEND_VALID_FLAG	EMP_INS_FLAG	CHANGE_STATE
ABCedu	KKK1234	567890	123456	90.0	96	1	1	1	C

## □ 심사과정코드(SIMSA\_CODE) 전송 시 유의사항

- 훈련기관에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발급된 심사과정코드(SIMSA\_CODE)를 #YYYYMMDD#####의 형식(20자리)으로 전송('-' 제외)  
\* 예) I202509112222C222330

## 3. 요청 사항

### □ 학습관리시스템(LMS) 수정 조치

- (수정 사항) 차시별 학습시간 및 진도율 관리 시스템 수정
  - (차시별 학습시간)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 기준과 공단의 학습시간 산출 기준을 반영하여 학습관리시스템(LMS) 수정 조치
  - (학습 진도율)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」 개정 예정 사항('26. 1. 1. 예정)을 반영하여 학습관리시스템(LMS) 수정 조치
- (조치 기한) '25. 12. 31.까지 조치
  - 조치 기한 내에 훈련기관 LMS에 자체적으로 반영하되(공단에 별도 확인 요청 불필요) 향후 과정 변경인정 점검, 모니터링 및 지도·감독에서 미이행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

## 4. 향후 계획

### □ 수료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실시

- '차시별 최소 학습시간 미달'뿐 아니라 진도율 80% 이상 달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실시 예정(시기 미정)으로,
  - '26. 1. 1.부터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전체 소정훈련시간 대비 전체 학습시간이 80% 이상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관리하여 수료 처리 필요

## 참고

## 사업주 훈련 및 국민내배카 규정 및 지침(발췌)

### 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기준

표1. 사업주 훈련 관련 현행 규정 및 지침('26. 1. 1. 개정 예정 사항)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(고용부 고시)	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* ('26. 1. 1. 개정 예정)
<p>제11조(지원금 지급 기준 등)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</p> <p>제6조 [별표1]</p> <p>평가 및 진도율-진도율: 진도율은 차시별로 과정 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학습 진도율을 인정</p>	<p>(4) 훈련방법별 수료요건 (생략)</p> <p>○ 인터넷원격훈련 및 스마트훈련 (생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(1일 학습시간은 8시간 초과 불가)</li><li>- (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)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실제 학습시간을 인정</li></ul> <p>※ (사례) 1차시가 30분인 과정의 경우, 실제 학습 시간이 15분이면, 학습 시간 15분 인정</p> <p>※ 배속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학습한 시간만 인정함</p> <p>※ 실제 학습시간은 각 차시별 과정심사시 인정받은 학습 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(최종진도율 산정 기준) 진도율은 [전체 학습시간÷전체 소정훈련시간×100]으로 계산하며, 소수점 발생시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</li></ul> <p>※ 전체 학습시간 :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전체 차시의 실제 학습시간의 총합</p> <p>※ 실제 학습시간 : 훈련생이 콘텐츠 학습에 참여한 실제 소요시간</p> <p>※ 전체 소정훈련시간 :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각 차시별 학습시간의 총합</p>

\* 공단 기업지원부 HRD-Net 안내사항(공지사항 게시글('25.9.16. 등록)) 참조

## 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수료기준(원격훈련과정)

표2.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현행 규정

###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(고용부 고시)

제36조(출석률) ① 훈련생의 출석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(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)한다. 다만, 원격훈련과정과 혼합훈련과정 내에 편성된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"출석률"을 "학습진도율"로 본다.

구분	계산식
1.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	$\frac{\text{〈단위기간〉 출석(인정)일수}{\text{〈단위기간〉 소정훈련일수}} \times 100$
2.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,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	$\frac{\text{〈단위기간〉 출석(인정)시간}{\text{〈단위기간〉 소정훈련시간}} \times 100$
3. 원격훈련과정(단,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은 제외한다)	전체 학습시간 ÷ 전체 소정훈련시간 × 100
4. 혼합훈련과정	집체훈련 및 비대면실시간훈련은 제1,2호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, 인터넷원격훈련은 교과목별 진도율 × 교과목별 가중치(교과목 소정훈련시간 ÷ 원격훈련 전체 소정훈련시간 × 100)의 합으로 계산

제38조(훈련기관의 수료보고) ① 훈련기관은 훈련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훈련생의 수료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HRD-Net에 입력하여야 한다.

1. 수료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(생략)

나. 원격훈련과정(단,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)

- 1) 학습진도율이 80 퍼센트 이상이고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에 응시하여 그 평가점수가 60 점 이상일 것(100점 만점 기준). 다만, 최종평가 응시자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라도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주일이 되는 날까지 재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료한 것으로 본다.
- 2) 1)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5호제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(K-디지털 크레딧)은 학습진도율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수료한 것으로 본다.

다. 혼합훈련과정: 집체훈련(비대면실시간훈련을 포함한다)의 출석률과 인터넷원격훈련의 학습진도율이 각각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

제19조(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요건) ③ 인터넷원격과정, 우편원격과정, 스마트훈련과정(이하 "원격훈련과정"이라 한다)을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별표 1의 요건을 갖출 것

(생략)